

'26년 AI·XR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1차회의 결과

(26.5.27.(수), MDIA 정책기획팀)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5월 26(화)(오후2~4시)/MDIA 대회의실(서울 강남)
- (참석자) : 총 18명(오프라인 13명/온라인 5명)

□ 논의 내용

- 분과 운영방향 논의
- AI클래스 시대의 사생활·정보보안 이슈진단과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산업친화적 법제화 제안(시어스랩 정진욱 대표 발제)
- AI/AR 클래스 디바이스의 법률적 과제(법무법인(유)광장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 세부 일정

시 간	세부내용	비고
14:00 ~ 14:05	5분 참석자 소개 및 회의 안내	사무국
14:05 ~ 14:20	15분 분과장 인사 및 26년도 운영방향 논의	송도영 분과장
14:20 ~ 14:50	30분 ▶ AI 클래스 시대의 사생활·정보보안 이슈진단과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산업친화적 법제화 제안	시어스랩
14:50 ~ 15:00	10분 휴식	
15:00 ~ 15:30	30분 ▶ AI/AR 클래스 디바이스의 법률적 과제	법무법인 광장
15:30 ~ 16:00	30분 자유 토의 및 마무리	분과장 및 분과원

□ 회의 내용

- 분과 운영방향 논의
- AI+AR 클래스 관련 산업계 발제(시어스랩 정진욱 대표)
 - 시장동향 및 주요쟁점 : AI 클래스 시장 성장 본격화로 인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확대, 무단 촬영·녹음, 생체정보 수집, 위치 추적, AI 학습데이터 활용 등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
 - 국내외 동향 : (해외) 미국·EU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AI 디바이스 관련 규제·입법 논의 진행 (국내) AI 클래스 활용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전용 법·제도 부재
 - 업계 제언 및 기대효과 : 촬영 고지 의무/데이터 관리 기준/보안 인증체계 등 AI 클래스 특화 제도 마련 필요,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육성을 병행할 수 있는 규제 체계 구축 및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관련 질의응답

질의	답변
AI 클래스 확산에 따른 우려	AI 클래스 및 AI 웨어러블 기기 확산에 따라 무단 촬영·녹음,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촬영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 제도의 한계	개인정보보호법상 촬영 사실 고지 의무 등이 존재하나, AI 클래스와 같은 신기술 환경에 대한 실효성 및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 제시
규제 방향 논의	촬영 행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데이터 저장·관리·활용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과 오남용 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기술적 대응 방안	온디바이스 AI, 국내 서버 저장, 민감정보 자동 차단 등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필요성 논의
제도 개선 과제	AI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인증체계 도입과 산업 육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 AI/AR 글래스 디바이스의 법률적 과제(법무법인(유)광장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 기술 및 시장 동향 : AI·AR 글래스의 확산으로 실시간 정보 수집·분석 기반 서비스 확대 및 활용 분야 다변화
 - 주요 법적 쟁점 : 영상·음성정보, 생체정보 및 생체인식정보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현행 제도 검토 :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적용 가능하나 공개장소 범위, 촬영 고지 방식 등 해석상 쟁점 존재
 - 데이터 활용 이슈 : 서비스 제공, AI 학습, 성능 개선 등 목적별 데이터 활용 범위 및 적법 처리 근거 검토 필요
 - 사업자 대응 과제 : 데이터 처리 주체 간 책임 명확화, 촬영 표시 의무 이행, 프라이버시 보호 중심 서비스 설계 필요
 - 정책 제언 : AI 글래스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인증체계 및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을 통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
 - 향후 과제 :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구체적 해석 기준 정립 추진 필요
- 관련 질의응답

질의	답변
AI 글래스 제조사도 개인정보 규제 대상인가?	제조사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주요 규제 대상임
제3자 정보나 의료 데이터 활용은 가능한가?	활용 목적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지며, 의료 데이터는 별도 절차가 필요
개인이 촬영한 영상을 올리면 문제가 되는가?	초상권·사생활 침해 등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 AI 글래스 관련 제도는?	별도 개인정보 인증 제도는 없으며 일반 제품 인증 위주로 운영
향후 필요한 제도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PBD, 보험·공제 등 신뢰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대상 인원 : 총 18명

구분	소속	성명	직급	비고	
연·내·외·부	학계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분과장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발제자
	산업계	더픽트	전창대	대표	
		글로벌포인트	조상용	대표	
		브이리스브이알	권종수	대표	
	연구계	저작권 위원회	김찬동	팀장	온라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신각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욱	책임연구원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성미	팀장	개방형참여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박기주	PM	개방형참여자	
개방형 참여자	시어스랩	정진욱	대표	발제자	
	피앤씨솔루션	최치원	대표		
	피앤씨솔루션	손용식	팀장		
	피씨엔	김나영	차장		
	요요인터랙티브	이경주	대표이사		
정부	과기정통부	박선경	사무관		
간사	MDIA	이혜민	과장		
	MDIA	박지수	대리		